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Version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SK 케미칼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
| | Issue Date: 2023/05/12 | |

목 차

| | |
|-----------------------------------|----|
| 제1장 (총칙) | 5 |
| 제1조 (목적) | 5 |
| 제2조 (적용범위) | 5 |
| 제3조 (책임과 권한) | 5 |
| 제2장 (조직상황) | 9 |
| 제4조 (조직의 상황 이해) | 9 |
| 제5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및 경계) | 10 |
| 제6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 11 |
| 제7조 (부패 리스크 평가) | 11 |
| 제3장 (리더십) | 12 |
| 제8조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 | 12 |
| 제9조 (부패방지 조직구성) | 12 |
| 제10조 (부패방지 방침) | 13 |
| 제11조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 14 |
| 제12조 (부패방지 준수기능 및 준수책임자) | 14 |
| 제13조 (의사결정의 위임) | 15 |
| 제4장 (기획) | 15 |
| 제14조 (부패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 15 |
| 제15조 (부패방지 목표 및 목표 달성 기획) | 16 |
| 제5장 (지원) | 17 |
| 제16조 (자원) | 17 |
| 제17조 (역량/적격성) | 18 |
| 제18조 (고용프로세스) | 18 |
| 제19조 (교육훈련) | 19 |
| 제20조 (의사소통) | 21 |
| 제21조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 | 21 |
| 제6장 (운용) | 23 |
| 제22조 (운영 계획 및 관리) | 23 |
| 제23조 (실사) | 24 |
| 제24조 (재무적 관리) | 25 |
| 제25조 (비재무적 관리) | 26 |
| 제26조 (통제받는 조직과 외부관련자의 부패방지 관리 실행) | 27 |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

| | |
|----------------------------------|----|
| 제27조 (부패방지에 대한 의지표명) | 28 |
| 제28조 (선물, 접대, 기부 및 유사한 편익)..... | 28 |
| 제29조 (부패방지 부적합(불충분)에 대한 관리)..... | 30 |
| 제30조 (문제/우려사항 제기) | 30 |
| 제31조 (부패의 조사 및 조치)..... | 31 |
| 제7장 (성과평가) | 32 |
| 제32조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 32 |
| 제33조 (내부심사)..... | 34 |
| 제34조 (경영검토)..... | 36 |
| 제8장 (개선)..... | 37 |
| 제35조 (시정조치)..... | 37 |
| 제36조 (지소적 개선)..... | 38 |
| 부칙..... | 39 |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 Issue Date: 2023/05/12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효과적, 효율적 수행과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해, 각 사규와 연계하여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기본적 방향과 책임을 규정하고 관리하며, 업무수행 중 부패방지에 필요한 각 부서별 책임과 권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의 요구사항 및 법적/규제적 요구사항, 이해관계자와 회사 내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회사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운영 및 지속적인 개선에 필요한 업무는 본 규정을 포함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제3조 (책임과 권한)

① 이사회

1. 부패방지 방침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구축 확인
2.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 승인
3. 부패방지 관련 운영 결과 및 정보의 주기적인 검토
4. 최고경영자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효과성을 합리적으로 감독
5. 경영전략과 부패방지 방침의 일관성을 검토
6.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효과적 운용에 필요한 자원 할당 및 배분 지시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

② 대표이사

1. 부패방지 방침 승인
2. 부패 리스크에 따른 방침과 목표를 포함하는 경영시스템의 수립/실행/유지/검토
3.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운영결과의 효과성 검토 및 의사소통
4.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에 관련된 각 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및 승인
5. 내/외부 이슈 및 리스크 평가결과 확인
6.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통합 및 관련 규정의 승인
7.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인적, 물적 자원 배치
8.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성 검토
9.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지휘 및 지원
10. 조직 내 적절한 부패방지 문화 및 지속적인 개선 촉진
11. 회사의 모든 경영진/관리자의 책임 범위에 따른 역할을 지원
12. 부패방지 신고자가 보복이나 차별 또는 징계 조치를 받지 않음을 보장
13. 주기적으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운영내역 및 결과, 문제점 등을 이사회에 보고

③ 부패방지 주관부서

1. 부패방지 관련 내/외부 이슈 파악
2.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파악



Title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3. 부패방지 적용 범위 설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부패방지 리스크의 파악, 분석, 평가 결과 취합 및 검토 보고
5. 부패방지 준수 의무의 파악 및 관련 정보 공유
6.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운영 결과를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7.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방침의 개발 및 기획
8.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미 준수 결과보고
9. 부패 리스크 조치 계획에 따른 각부서 이행 모니터링 및 효과성 검토
10. 부서별 부패방지 목표 및 달성계획 적정성 검토
11. 부패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적격성에 대한 자격 부여
12. 부패방지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행
13. 부패방지 문화와 행동 양식을 홍보하고 의사소통
14. 부패방지 의사소통 대상의 선정 및 의사소통 방법 결정
15. 부패행위 조사 및 처리주관
16. 부패방지 성과지표의 개발과 이행상황 모니터링
17. 부패방지 내부심사 실시 및 결과보고
18. 부패방지 성과와 경영검토 자료 취합/검토 및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19. 부패방지 성과지표의 설정 검토 및 성과지표 결과 집계 및 피드백
20. 부패방지 이행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 조치 요구
21. 시정 조치의 이행 확인 및 효과성 평가
22.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이 설계되고 실행됨을 감독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
| | Issue Date: 2023/05/12 | |

23. 부패방지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조언과 지침을 제공

24.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이 ISO 37001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

④ 구매 주관 부서

1.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2. 공급업체 등록, 정기평가 및 모니터링
3. 공급업체 부패 관련 조사/처리의뢰/제재

⑤ 재무/회계 주관 부서


1. 재무적 거래의 관리 및 통제
2. 재무적 지급계획의 통제
3. 주기적인 재무 실사
4. 회계 처리기준 수립 및 통제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운영, 평가, 보고

⑥ HR 주관 부서

1. 채용 시 부패준수 정도 검증
2. 부서 이동에 따른 부패준수 정도 검증
3. 부패방지규정 미준수 인원에 대한 징계
4.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성과 기여에 대한 포상

⑦ 각 부서

1. 부패방지 관련 내/외부 이슈 파악
2. 부패방지 관련 의무 준수 및 이해관계자 요구 파악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 Issue Date: 2023/05/12 |


3. 부패방지 리스크 평가, 목표 관리 및 개선활동 실행
4. 회사 부패방지 방침 및 사규에 따른 준수 및 이행
5. 업무 분장에서 정한 책임과 권한에 따른 업무 수행 및 내/외부 의사소통
6. 교육훈련 계획에 따른 교육 이수 및 결과 보고
7. 부패방지 문화 인식 및 참여
8. 부패방지 미준수 및 부적합의 시정 및 시정조치

제2장 조직상황

제4조 (조직의 상황 이해)

① 내/외부 이슈의 파악

1. 부패방지 주관부서는 매년 부패방지 자정시스템 점검/평가 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내/외부 이슈를 파악하여 부정적 이슈 및 이해관계자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슈와 이해관계자 요구는 지속가능보고서 및 사업계획을 참조하여 파악한다.
3. 내부 이슈는 회사의 주요 전략, 정책, 제도, 사규, 조직문화, 구성원의 행동양식, 업무방식의 변화 등이며, 업무수행 중 불확실성의 영향 요소를 포함한다.
4. 외부 이슈는 국가 정책, 법규,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 감독 기관의 감사 방향과 제재 사항 등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부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

5. 부패방지 관련 내/외부 이슈 파악 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가. 회사의 업무 적용 범위 내 업무 구조 및 업무 수행에 위임된 의사결정 권한

나. 회사의 업무 적용 범위 내 현재 운용 또는 운용이 예상되는 위치 및 분야

다. 회사의 업무 활동 및 운용의 복잡성, 성격 및 규모

라. 회사의 사업영역 및 사업모델

마.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관계사 및 단체

바. 회사를 통제하는 관계 당국 및 단체

사. 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 파트너

아. 업무와 관련된 공직자와의 상호 작용의 성질과 업무 관계 정도

자. 적용 가능한 법규, 규제, 계약상 제약 및 업무 수행관련 법적, 도덕적 의무


②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1. 부패방지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 관련 외부기관 등이며, 내/외부 이슈 발생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다.

2.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파악 시, 각 부서는 이해관계자의 의무적 요구사항과 기대사항, 자발적 의지표명을 모두 포함하여 파악한다.

제5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및 경계)

① 적용범위: 그린케미칼 사업 (코폴리에스터 수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접착 및 코팅제의 개발, 제조 및 서비스)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


② 경계: 본사 및 울산공장

제6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 ① 본 규정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수립, 문서화, 실행, 유지 및 지속적인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대비 관련 문서목록(별첨1)과 같이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부패방지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경영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한다.
- ② 본 규정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따른 경영 시스템의 실행과 사규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은 세부 실행 사항을 정의하여 부패 리스크를 식별, 평가하고, 부패를 예방, 탐지 및 대응하기 위해 계획된 방법을 포함하여 실행이 가능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제7조 (부패 리스크 평가)

- ① 부패방지 주관부서는 매년 내부 이슈 및 이해관계자 요구를 고려하여 부패 리스크를 식별/평가한 후 각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는 업무 특성 및 업무 중 미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상황을 반영한 수정 의견을 제출하여 부패방지 주관부서와 협의, 최종 부패 리스크를 평가한다. 부패 리스크의 식별 및 평가의 세부적인 절차는 별첨 2에 따른다.
- ② 연1회 정기적인 리스크 평가 외에 다음의 경우 필요시 비정기 평가를 실시한다.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
| | Issue Date: 2023/05/12 | |


1. 새로운 상품의 출시 또는 기존 제품의 변경
 2. 중요한 전략 또는 조직구조의 변화
 3. 시장 상황 등 외부의 환경변화
 4. 부패 방지 의무(사규 및 관련 법규)에 대한 변경
 5. 중대한 부패 준수 위반 사실의 발생
 6. 법률 및 제도 제, 개정
 7. 실사 및 내부심사를 통해 리스크의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 ③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주관부서와 각 부서는 선정 평가된 부패방지 자정시스템 점검표상의 부패 리스크에 대해 점검 항목, 점검 방법, 개선 계획을 검토하여 해당 리스크에 대한 개선 활동을 수행한다.
- ④ 부패방지 주관 부서는 각 부서의 조치 계획에 따른 결과를 매년 1회 정기적 또는 필요시 유효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장 리더십

제8조 (이사회 및 최고 경영자)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리더십은 본 규정의 제3조 책임과 권한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행되도록 한다

제9조 (부패방지 조직구성)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


부패방지 주관 조직은 전사 조직도에 따라 회사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시 부서별 부패방지 담당자를 선임하여 업무가 수행되도록 한다

제10조 (부패방지 방침)

- ① 이사회 및 대표이사는 모든 임직원이 동의할 수 있는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공포한다.
- ② 회사의 부패방지 방침은 윤리규범으로 한다.
- ③ 부패방지 주관부서는 부패방지 방침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방침이 수립되도록 검토한다.

- 1. 부패 금지 의지
- 2. 회사 업무에 적용 가능한 부패 방지법 준수 요구
- 3. 회사의 사업 목적에 적절성
- 4. 부패방지 목표의 수립을 위한 틀을 제공
- 5.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실행의지의 포함
- 6.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권장
- 7.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위한 의지표명 포함
- 8. 부패방지 주관부서 책임자의 권한 및 독립성에 대한 설명
- 9. 부패방지 방침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설명

- ④ 부패방지 방침은 문서화하여 회사 구성원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공지한다.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

제11조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 ①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독은 효과적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 ② 대표이사는 조직도와 업무분장표에 따라 각 부서에 부패방지 관련 역할/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며, 의사소통과 이해가 되도록 한다.
- ③ 모든 임직원과 부서는 부패방지 방침과, 업무 수행에 따른 부패 리스크의 적용 순위를 이해하고, 자신의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한다.

제12조 (부패방지 준수기능 및 준수책임자)

- ① 최고경영자는 부패방지 주관부서 책임자를 임명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1. 부패방지 책임자에게 충분한 자원과 적절한 적격성, 지위, 권한 및 독립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부패방지 주관 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기술한다.
 2. 부패방지 주관부서 책임자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나 우려 사항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에 직접 보고한다.
 3. 필요시 최고경영자는 외부 전문인력에게 부패방지 준수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고경영자는 해당 인력이 위임된 기능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
| | Issue Date: 2023/05/12 | |


제13조 (의사결정의 위임)

- ① 최고경영자는 필요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관련 의사결정권한을 부패방지 주관부서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권한위임시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의사결정권자의 권한수준을 이해충돌이 없도록 적절하게 위임하는 업무기준을 설정하고 유지하며, 위임된 업무의 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보고받는다.

제4장 기획

제14조 (부패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 ① 부패방지 주관부서는 부패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부패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조치계획이 이행되도록 한다.
- ② 기회는 부패방지 관련 긍정적인 상황으로서 조치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 ③ 부패방지 주관부서는 리스크에 따른 조치 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보장
 - 2. 부패방지 방침 및 목표에 관련된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의 예방/감소 활동
 - 3.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모니터링 방법
 - 4. 지속적 개선의 달성 방안
- ④ 부패방지 주관부서는 부패 리스크 자정시스템 점검/평가표에 부패 리스크 및 기회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조치 계획을 세우고, 관련 부서에 배포하여 실행하도록 한다.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

- ⑤ 각 부서는 수립된 개선조치 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 및 본 규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리스크의 조치계획을 실행한다.
- ⑥ 부패방지 주관부서는 내부심사 및 필요 시 자정시스템의 부패 리스크 및 기회의 조치 계획을 확인하여 부패 리스크의 개선조치를 확인하고 실행 후 리스크 조치 효과성이 재평가되도록 한다

제15조 (부패방지 목표 및 목표 달성 기획)

- ① 부패방지 주관부서는 전사 부패방지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통보하며 각 부서는 부패방지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리스크의 파악, 분석, 평가 결과와 준법지원 결과, 감사결과, 경영진 요구사항을 포함한 개선 목표치를 설정하고 해당 리스크 별로 목표 달성 계획을 수립한다.
- ② 부패방지 주관부서는 목표설정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고려하고 목표가 실행되도록 한다.
 - 1. 부패방지 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2. 이슈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부패 리스크를 고려해야 함.
 - 3.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해야 함.
 - 4. 의사소통/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갱신되어야 함.
- ③ 부패방지 목표는 목표치 및 수행 계획을 포함하여 매년 부패방지 자정시스템 점검/평가 시 목표 달성과 추진 정도를 집계 관리한다.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

- ④ 부패방지 주관부서는 파악된 각 부서의 리스크를 중심으로 부서별 부패방지 목표치를 설정하고 매년 그 평가 결과를 산출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사내에 의사소통 해야 한다.
- ⑤ 부패방지 목표에 따른 달성 계획 수립 시 다음을 포함하도록 한다.
1. 달성대상
 2. 필요자원
 3. 책임자/완료시기
 4. 결과 평가 및 보고 방법
 5. 제재 또는 벌칙 부과 책임자
- ⑥ 각 부서 목표 및 목표달성계획은 실행가능한 수준으로 부패방지 자정시스템 점검/평가표에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부패방지 주관부서는 내부심사 및 모니터링시 확인한다.

제5장 지원

제16조 (자원)

- ① 회사의 규모와 업무 복잡성에 맞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구축, 개발, 실행, 평가, 유지, 지속적 개선에 요구되는 자원을 결정하고 본 규정 및 관련 규정의 실행에 따른 자원을 확정한다.
- 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경영진은 부패방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되도록 한다.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
| | Issue Date: 2023/05/12 | |

③ 자원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과 운영기술의 확보, 부패방지 조직, 업무공간,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비품, S/W 및 재무적 지원을 포함한다.


제17조 (역량/적격성)

①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성과 달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업무 역량과 적격성이 결정되도록 한다.

1.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적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필요한 역량/적격성을 갖추도록 적절한 교육훈련과 직무경험을 부여하고 교육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3. 역량/적격성이 필요한 대상으로 부패방지 주관부서 책임자, 내부심사원, 제보조사원 각 부서의 부패방지 업무 담당자, 기타 대표이사가 결정한 모든 인원이 포함된다.
4. 역량/적격성에 관련 인원은 역량적격성 기준표 (별첨 3)에 따라 교육 결과 및 관련 기록은 확인 가능하게 관리한다.


제18조 (고용프로세스)

① 회사의 모든 인원은 채용관리규정 및 윤리규범에 따라 고용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

1. 모든 구성원에게 부패방지방침, 준법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미준수시 징계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서약서를 징구한다.
2. 모든 임직원은 정기적으로 부패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3. 부패방지 방침을 위반하는 직원에 대해 상벌규정에 따라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한다.
4. 모든 임직원은 모든 다음과 같은 보복, 차별 또는 징계조치 (예: 위협, 고립, 강등, 전보, 해고, 괴롭힘 등) 가 없도록 해야 한다.
 - 가. 업무수행시 부패방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된 모든 관련 활동에 참여를 거부 또는 거절에 따른 보복 및 징계
 - 나. 미수의, 실행된, 또는 의심되는 부패방지 방침 또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위반에 대해 선의나 합리적인 확신을 근거로 제기되는 우려사항 신고에 따른 보복 및 징계
5. 모든 부서는 부패 리스크 평가에서 결정된 부패 리스크가 큰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의 부패방지 준수를 위해 다음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 가. 해당 인원의 고용 또는 이동시, 부패방지 방침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이동/승진 전에 인사규정에 따라 적절성을 검토한다.
 - 나. 해당 인원의 부패 방지를 위해 윤리준수 서약을 실시하고, 윤리규범과 윤리규범실천지침 및 관련 규정들에 의해 부패방지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제19조 (교육훈련)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
| | Issue Date: 2023/05/12 | |

- ①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적격성을 보유해야 하며, 부패방지 주관부서 책임자 및 각부서 담당자는 역량/적격성을 충족하기 위한 교육 이수, 직무경험, 관리적 기술/지식 등을 충족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부패방지 교육프로그램의 목표는 모든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부패방지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 ③ 부패방지 주관부서는 부패방지 교육훈련 계획이 전사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도록 한다. 부패방지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
1. 부패방지 방침, 규정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및 준수 의무
 2. 부패 리스크 및 부패로 인하여 조직과 구성원에게 초래되는 피해
 3. 업무와 관련하여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
 4. 청탁 또는 뇌물 제공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법
 5. 부패를 예방/회피하고 중요 부패 리스크 지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6. 부패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방법
 7.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의 미준수에 따른 업무 영향과 잠재적인 결과
 8. 모든 우려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방법과 대상
 9. 이용 가능한 교육훈련 및 자원에 대한 정보
- ④ 부패 리스크 및 내/외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부패방지 인식과 교육훈련을 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
| | Issue Date: 2023/05/12 | |

- ⑤ 부패방지 주관부서는 매년 관련된 이슈 및 리스크의 정도와 새로운 관련 정보를 반영하여 교육훈련계획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다.
- ⑥ 회사의 업무가 외부 이해관계자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필요시 해당 인원 및 이해관련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훈련을 실행해야 한다.
- ⑦ 교육훈련은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을 통해 수행되고 교육훈련이 필요한 관련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결과보고를 해야 한다.

제20조 (의사소통)

- ① 부패방지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각 부서의 업무 수행에 따른 부패방지 관련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결정할 경우 다음을 명확하게 한다.
 1. 무엇을 소통할지: 예) 미준수 결과, 적용법규, 감사결과, 목표달성결과, 리스크 조치결과 등
 2. 언제 소통할지: 예) 이사회, 인사위원회
 3. 누구와 소통할지: 예) 부서책임자, 경영진, 이사회 등
 4. 어떻게 소통할지: 예) 회의체, 사내방송,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등
- ② 부패방지 방침은 조직의 모든 인원과 업무 관련자에게 공유되어야 하고, 주요한 부패 리스크는 업무 관련자에게 직접적으로 의사소통 되어야 하며, 필요 시 공개되어야 한다.

제21조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
| | Issue Date: 2023/05/12 | |

① 효과적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갖추어야 하며 문서의 관리는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문서와 회사 사규와 연계하여 활용되어야 하며 문서화된 정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1. 부패방지 방침
2.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목표, 세부목표, 추진계획의 내용
3. 부패방지를 위한 역할 및 책임 할당된 업무 분장내역
4. 부패방지 책임과 의무 기록
5. 부패방지 리스크와 평가 및 조치 계획
6. 부패방지 미준수에 대한 기록
7. 연간 부패방지 추진 계획
8. 훈련성과에 대한 결과 및 개인별 교육훈련 결과

② 모든 문서는 제정하고 개정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규관리 규정에 따른다.

1. 문서의 파악 및 내용(즉, 제목, 제, 개정일자, 작성자, 참고문헌, 제, 개정번호) 문서 형식(예: 언어, 소프트웨어버전, 그래픽)과 매체(예: 종이, 전자)
2. 문서의 적절성과 충족성에 대한 검토와 승인은 사규관리 규정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③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에 의해 요구되는 문서는 다음 사항이 관리되어야 한다.

1.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사용하기 쉽고 접근 가능하며 적합하게 보관되어야 함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

2. 대외비 유지, 부적절한 사용 방지를 위해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함
- ④ 문서의 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되어야 한다.
1. 배포, 접근, 검색 및 사용
 2. 필요시 사용의 용이성 확보를 고려한 저장과 보존
 3. 개정에 대한 관리(예, 개정번호관리)
 4. 보유, 처분 및 폐기
 5. 문서의 생성과 관리에 대한 제3자의 역할
- ⑤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기획과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외부 출처의 문서는 적절하게 파악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⑥ 문서는 법적 자문을 구하는 목적으로 작성될 수 있으므로 법적 권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6장 운영

제22조 (운영 계획 및 관리)


- ① 모든 부서는 부패방지 의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리스크에 대한 조치 이행과 관리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이행해야 한다.
1.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실행기준과 관리방법의 설정
 2. 프로세스가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 것을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

- ② 부패 리스크를 예방하고 부적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법규 및 경제상황 변경 등도 검토하여야 한다.
- ③ 회사 업무의 일부를 외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매관리 규정 및 계약관리 규정에 따라 부패방지 업무가 수행되도록 한다.

제23조 (실사)

- ① 업무 수행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패 리스크를 확인해야 한다. 부패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점검되어야 한다. 실사는 변경사항과 새로운 정보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정해진 주기로 최신화 되어야 한다. 점검 결과 추가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현장 방문하며 세부적인 실사 평가 기준은 관련 업무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② 실사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이해관계자의 평가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비즈니스 특성 및 복잡도 (예: 직·간접적 영업, 할인 수준, 계약 체결 및 입찰 절차)
 2. 출자 및 지분 협정
 3. 조직의 참여범위 및 가용자원의 범위
 4. 관리 및 가시성의 수준
 5. 업무 관련자와 기타 관련된 제3자(공직자 포함)
 6. 5)항에 속하는 단체와 공직자와의 관계
 7. 관련된 구성원의 적격성과 자격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 Issue Date: 2023/05/12 |

8. 고객의 평판

9. 지역사회

10. 시장의 평판 또는 언론의 보도

③ 외부관련자/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사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1. 외부관련자/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및 상담

2. 외부관련자/업체의 주주와 대표이사의 부패 관련기사 검색

3. 관련 정보를 적절한 정부, 법원 및 국제적 출처에서 검색

4. 국가, 지방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공개한 계약 제한/금지 대상 여부

5. 외부관련자/업체의 윤리적 평판에 대해 적절한 다른 단체에 문의

6. 실사 지원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가 인원/조직을 지정

7. 불리한 정보에 대한 해당 외부관련자/업체의 해명

제24조 (재무적 관리)

① 재무관리 주관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패 리스크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리 주관부서는 재무적인 거래의 규모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급의 계획과 승인을 동일한 사람이 할 수 없도록 분리

2. 전결 기준에 따라 적절한 권한을 가진 자가 지급을 승인

3. 수행된 업무가 관련 승인절차에 따라 승인됨을 보장


4. 지급 승인에 대하여 최소 2명의 검토 및 확인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 Issue Date: 2023/05/12 |

5. 지급 승인에 대하여 적절한 증빙 문서를 첨부
6. 현금 사용의 금지 및 효과적인 현금 관리 방법 실시
7. 회계장부에 지급 분류와 설명이 정확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보장
8. 중요한 재무적 거래에 대해 주기적으로 경영진 검토를 실시
9. 주기적이며 독립적인 회계 감사 실시 및 회계 감사원의 정기적인 변경

제25조 (비재무적 관리)


- ① 비재무적 관리는 조달, 운용, 상업적 및 기타 업무활동의 비재무적 측면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 ② 회사 업무수행과 관련된 부패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조달, 운용, 상업적 및 기타 비재무적 관리방법으로서 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의 평가는 계약 전 관련 규정에 따라 실사를 통해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평가되어야 한다.
 1. 비즈니스 관련자가 당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필요성 및 적법성
 2. 서비스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3. 비즈니스 관련자에게 지불되는 모든 비용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비례적인지의 여부
 4. 가능한 최소 3명 이상의 경쟁자가 참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을 거친 이후에만 계약을 체결
 5. 최소한 2명의 구성원이 입찰을 평가하고 계약체결을 승인요구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

6. 계약 승인자와 계약 요청자가 서로 다르게 하고, 이들이 계약을 관리하거나 계약 업무의 완료를 승인하는 부서나 기능과는 다른 부서나 기능에 소속되도록 하는 직무의 분리
7. 계약조건의 최초승인, 변경승인이나 계약에 따라 수행된 업무나 공급을 승인하는 문서 (검수통보 등) 에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서명을 요구
8. 잠재적인 부패 리스크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을 수행
9. 접근권한을 적절한 구성원으로만 제한함으로써 입찰의 완전성이나 기타 가격에 민감한 정보를 보호
10. 관련 업무 구성원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와 양식을 제공

제26조 (통제 받는 조직과 외부관련자의 부패방지 관리 실행)

- ① 통제 받는 조직은 회사의 통제를 받는 내부 조직 및 자회사 등을 말하며, 외부관련자는 고객, BP, 정부기관 등을 말한다.
 - ②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부서는 본 규정에 따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실행, 또는 자체 부패방지 관리의 실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행해야 한다.
 - ③ 부패 리스크 평가나 실사를 통해 파악된 중간 이상의 부패 리스크에 대해 회사가 통제하지 못하는 외부관련자의 부패방지 관리가 관련 부패 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 회사는 외부관련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1. 외부관련자가 부패 리스크를 방지하는 관리수단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

2. 외부관련자가 부패방지 관리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 실행 가능하다면, 관련 거래, 프로젝트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관리수단의 실행을 외부관련자에게 요구, 또는

나. 부패방지를 위한 관리수단 실행을 외부관련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우, 리스크 평가 및 조치계획 수립 시 해당 외부관련자와의 관계에 대한 부패 리스크 관리방법을 고려하여 반영


제27조 (부패방지에 대한 의지표명)

리스크 평가 결과 중간 이상의 부패 리스크가 있는 비즈니스 관련자에 대해, 회사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 ① 관련 거래, 프로젝트, 활동 또는 관계와 관련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의한, 이익을 대신하는, 또는 이익을 위한 부패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비즈니스 관련자와의 관계에 대한 종결을 가능하게 계약서에 반영한다.
- ②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리스크 평가 시 해당 비즈니스 관련자에 대한 부패 리스크를 반영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28조 (선물, 접대, 기부 및 유사한 편익)

- ①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선물, 접대, 기부 및 유사한 편익의 제안, 제공 또는 수락으로 인한 부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


②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선물, 접대, 기부 및 기타 편익을 주거나 받는 것을 비록 상호간에 모두 뇌물로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3자 (사법기관이나 언론사 등)가 뇌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가능한 모든 선물, 접대, 기부 및 기타 편익을 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업무와 관련된 편익은 아래의 항목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을 포함한다.

1. 선물, 여흥 및 접대
2. 정치적 기부금 및 자선 기부금
3. 클라이언트 대표자나 공직자의 여행
4. 홍보비, 훈련비
5. 후원이나 지역사회 자선활동
6. 클럽 멤버십
7. 개인적 호의
8. 기밀정보 및 특권정보 제공

④ 선물 및 접대와 관련하여, 업무수행 시 다음을 포함하여 선물과 접대의 한도와 빈도가 관리되도록 한다.

1. 모든 선물과 접대를 전면 금지 또는
2. 선물과 접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다음 요인들을 기준으로 삼아 제한
 - 가. 최대 비용 (지역에 따라, 선물 및 접대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나. 빈도 (작은 선물과 접대도 반복되면 큰 금액으로 누적될 수 있음)
 - 다. 시기 (예: 입찰협상 중, 직전 또는 직후는 안 됨)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

- 라. 합리성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지역, 분야, 연령을 고려)
 - 마. 수령인의 신분 (예: 계약승인자, 허가증, 수수료증 발급담당자 등)
 - 바. 상호이익관계 (회사의 허용한도 이상으로 선물/접대를 받을 수 없음)
 - 사. 법적, 규제적 환경 (지역이나 조직에 따라 금지/통제되는 사항)
- ⑤ 정해진 가치나 빈도 이상의 선물이나 접대를 하기 이전에 적절한 관리자로부터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⑥ 정해진 가치나 빈도 이상의 선물이나 접대는 공개적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문서화하며 (예: 회계장부 또는 거래장부에 기재), 감독되도록 한다.


제29조 (부패방지 부적합(불충분)에 대한 관리)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패 리스크를 당사의 내부 시스템으로 통제 및 관리가 불가능 하거나, 해당 비즈니스관련자가 부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 ① 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한 빨리 종결, 보류, 정지 또는 취소한다
- ② 해당 비즈니스관련자에 대해 신규 거래, 프로젝트, 활동 또는 관계의 진행을 연기 또는 거절한다

제30조 (문제/우려사항 제기)

- ① 부패방지 미준수 및 부패관련 문제/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제보처리지침에 따라 제보자 보호와 처리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
| | Issue Date: 2023/05/12 | |

- ② 구성원 및 외부 관련자가 부패시도를 인지, 또는 실제 부패가 의심되거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관련 위반사항이나 취약점을 발견 시, 부패방지 책임자 또는 적절한 구성원에게 직접 또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선의와 타당한 확신에 근거하여 제보처리지침에 따라 신고하도록 장려한다.
- ③ 조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고서를 기밀로 취급하여 보고자 및 보고서에 포함되거나 참조된 다른 구성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
- ④ 익명의 신고를 허용하며, 신고한 구성원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금지한다.
- ⑤ 구성원이 부패에 연루될 수 있는 우려 또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1조 (부패의 조사 및 조치)

당사의 모든 미준수 및 부패관련 사고 시 부패방지 주관부서 책임자는 제보처리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① 부패방지 방침 또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② 객관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선정된 인력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한다.
- ③ 사내 모든 부서 책임자 및 구성원은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 ④ 조사경과 및 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되도록 해야 한다.
- ⑤ 모든 조사를 기밀로 수행하고 조사결과가 기밀로 유지되도록 한다.
- ⑥ 내부 점검 시 본인 소속 부서를 점검할 수 없으며, 제 3자를 선정하여 수행한다.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 Issue Date: 2023/05/12 |

⑦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시정 및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제7장 성과평가

제32조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① 부패방지 주관부서 및 해당 부서 담당자는 부패방지 운영에 따른 모니터링의 수행 시 다음 사항을 결정하고 수행한다.


1. 모니터링 및 측정의 대상
2. 모니터링 책임자
3. 효과적이고 적절한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방법
4. 모니터링 및 측정 수행 시기
5.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시기
6. 정보의 보고 대상 및 방법

② 모든 모니터링, 측정, 분석 결과는 기록으로 확인 가능하게 한다.


③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성과와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준법점검, 내부심사, 회계감사, 경영검토 등을 수행한다

④ 부패방지 주관부서 및 해당 부서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성과 달성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은 내부심사 및 필요 시 수행할 수 있다.

⑤ 모니터링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효과성과 운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정보 수집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거나 참조하여야 한다.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
| | Issue Date: 2023/05/12 | |

1.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모니터링 (내부심사시)
2. 교육 훈련의 효과 (내부심사 및 수시 계획 확인)
3. 운영과 관리의 효과 (부패방지 자정시스템 평가시)
4. 부패방지 의무 달성을 위한 책임의 효과적인 수행정도 (내부심사시)
5. 부패방지 의무에 대한 일반적 평가 (내부심사시)
6. 이전에 파악된 부패방지 실패를 조치한 결과 및 그 효과 (내부심사시)
7. 부패방지 위반 제보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제보처리시)
8. 부패방지 준수성과 모니터링 요소 (부패방지 자정시스템 평가시)
9. 부패방지 미준수 (자정시스템 평가 및 내부심사, 회계감사 등)
10. 부패방지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내부심사시)
11. 부패방지 의무 및 목표 달성이 안되는 경우 (내부심사시)
12. 부패방지 문화상태 (내부심사)
13. 구축된 성과지표 (자정시스템 평가시)
14. 법적, 규제적 문제 비율 (준법점검시)
15. 부패방지 미준수 비율 (경영검토시)
16. 부패방지 미준수의 결과로서 벌금, 기타 벌칙, 각종 비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영향의 평가 (준법점검, 경영검토시)
17. 보고와 시정 조치를 취하는데 걸리는 시간 (제보처리시)
18. 시간 경과에 따른 부패방지 미준수의 리스크 (자정시스템 평가시)
19. 부패방지 미준수 경향 (경영검토시)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 Issue Date: 2023/05/12 |

제33조 (내부 심사)

①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년 1회 이상 내부심사를 수행해야 한다. 내부심사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부심사가 수행되도록 한다.

1.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위한 자체 요구사항
2.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규격의 요구사항
3.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실행 및 유지 여부
4. 법적 규제적 요구사항의 준수

② 정기적인 내부심사 외 범규의 변경, 중요한 사고 발생시 등 필요시 수시 내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내부심사는 리스크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큰 부서/업무를 위주로 실시한다.

1. 부패 또는 부패 혐의 사항
2. 부패방지 방침 또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규정 위반사항
3. 비즈니스 관련자가 부패방지 요구사항을 미준수하는 경우
4.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④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심사를 위한 내부 심사원은 역량/적격성 기준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한다.

⑤ 부패방지 내부심사 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내부심사 빈도, 방법, 책임, 요구사항
2. 중요성과 이전 감사 결과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

3. 내부심사 기준과 개별심사의 범위

4. 객관적이고 공정한 내부심사를 위해 내부심사원 선정 시 자신의 업무 영역을 감사하지 않도록 해야 함


- ⑥ 내부 심사원은 주관부서에서 제공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내부심사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내부심사 시 심사 대상 부서의 내부심사 결과 및 관찰 사항을 기록한다.
- ⑦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내부심사의 관찰 사항은 중부적합, 경부적합 개선권고 사항으로 관찰하여 내부 심사 체크리스트 상에 기록한다.
- ⑧ 중부적합은 절차의 누락 또는 전체 미준수 경 부적합은 절차의 일부 미준수 사항으로 결정하고 개선권고는 부적합은 아니나 업무의 효과성에 필요한 개선 사항을 관찰사항으로 결정한다.
- ⑨ 주관부서에서 제공된 내부심사 체크리스트는 매 감사 시 감사 대상 부서별로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⑩ 내부 심사 주관부서는 내부 심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부적합 건 별로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한다.
- ⑪ 내부 심사원은 감사 시 부적합 사항을 시정조치요구서에 기록하며 감사 종료 후 주관부서에 부적합 시정조치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⑫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주관부서는 부적합 시정조치요구서에 심사대상 부서의 시정조치 완료 예정일을 기록하고, 시정조치 완료일에는 해당 내부심사원이 직접 확인한 후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 Issue Date: 2023/05/12 |

- ⑬ 내부 감사원 등은 시정조치 확인 시 시정조치 또는 재발 방지 대책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감사 또는 시정조치요구서를 재발행한다.
- ⑭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내부 심사 주관부서는 내부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대상 부서의 부적합 시정조치요구서, 시정조치 계획 및 관찰사항 등을 포함한 내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주관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4조 (경영검토)

- ①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주관부서는 년1회 이상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정성, 타당성, 효과성을 파악하여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 보고한다.
- ② 부패방지 주관부서는 경영검토 시 모든 부서의 업무 운영 결과를 취합하고 다음 사항이 경영검토 시 포함되도록 한다.
 - 1. 이전 경영검토에서 조치된 사항
 - 2. 부패방지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내/외부 이슈의 변화내역
 - 3. 경영검토의 결과는 지속적 개선기회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포함하고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의 경향이 포함되도록 한다
 - 가. 부적합과 시정조치
 - 나.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
 - 다. 내 외부 심사결과
 - 라. 부패에 대한 보고서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

마. 제보 조사 결과

바. 부패방지 자정시스템에서 결정된 부패 리스크

사. 부패 리스크를 다루기 위한 조치의 효과성

아.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기회

③ 경영검토 보고서는 대표이사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 규정 등에 따라 의사록 등에 기록한다.

④ 이사회, 대표이사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⑤ 부패방지 주관부서 책임자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부패 리스크의 효과적인 관리상태
2. 효과적 실행여부

제8장 개선

제35조 (시정조치)

① 모든 부서는 업무수행 중 부패방지 요구사항에 대한 부적합 및 미준수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부적합을 관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함
2. 결과를 처리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
| | Issue Date: 2023/05/12 | |


② 부적합사항 및 미준수의 재발방지를 위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평가하고 실시한다.

1. 부적합 사항의 검토와 분석
2. 부적합 원인의 결정
3. 유사한 부적합이 존재하거나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결정
4. 필요 조치의 실행
5. 시정조치의 효과성 검토
6. 필요 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개정을 실행

③ 중대한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요구서에 의해 시정조치가 수행되도록 한다.

제36조 (지속적 개선)

- ①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 ② 수집/분석/평가된 이해관계자/이슈/리스크 등의 정보와 부패방지 조치결과 보고에 포함된 정보는 부패방지 성과 개선을 위한 근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 | | | |
|---|------------------------|----------------|------------------------|
|  | Title |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 Issue Date: 2023/05/12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관련 문서목록

|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 | 주관부서 | 관련 문서 |
|-----------------|---------------------------|---------------------|--|
| 4. 조직의 상황 | 4.1 조직과 조직 상황에 대한 이해 | 부패방지 주관부서 |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규정 |
| | 4.2 이해관계자의 니즈 및 기대 이해 | | |
| | 4.3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적용 범위 결정 | | |
| | 4.4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 | |
| | 4.5 부패 리스크 평가 | | |
| 5. 리더십 |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 이사회 주관부서 HR 주관부서 | 이사회 규정 감사 위원회 규정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규정 |
| | 5.2 부패방지 방침 | 부패방지 주관부서 | 윤리 규범 |
| | 5.3. 조직의 역할, 책임과 권한 | HR 주관부서 |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
| 6. 기획 | 6.1 리스크를 다루기 위한 조치 | 부패방지 주관부서 |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규정 |
| | 6.2 부패방지를 위한 목표와 목표 달성 계획 | 부패방지 주관부서 | 윤리 규범 윤리 규범 실천지침 |
| 7. 지원 | 7.1 자원 | 부패방지 주관부서 | 준법통제 규정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규정 |

| | | |
|---|------------------------|----------------|
|  | Title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
| | Issue Date: 2023/05/12 | |

| | | | |
|-------------|--|---------------------------------|---|
| | 7.2 역량과 적격성 | 부패방지 주관부서 HR 주관부서 |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규정 인사규정 제보처리 지침 상벌규정 |
| | 7.3 인식과 교육훈련 | 부패방지 주관부서 | 준법통제 규정 |
| | 7.4 의사소통 | 이사회 주관부서 HR 주관부서 |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ESG위원회 규정 |
| | 7.5 문서화된 정보 | 주관부서 | 사규관리 규정 |
| 8. 운용 | 8.1 운용 기획 및 관리 | 부패방지 주관부서 | 준법통제 기준 |
| | 8.2 실사 | HR 주관부서 구매 주관부서 계약 주관부서 | 인사규정 계약관리 규정 구매관리 규정 상벌규정 |
| | 8.3 재무적 관리 | 부패방지 주관부서 회계 주관부서 | 내부회계관리 규정 자금관리규정 법인카드 사용지침 |
| | 8.4 비 재무적 관리 | 구매 주관부서 계약 주관부서 | 계약관리 규정 구매관리 규정 |
| | 8.5 통제 받는 조직과 업무 관련자의 부패방지 관리 실행 | 부패방지 주관부서 구매 주관부서 계약 주관부서 | 윤리규범 윤리규범 실천지침 계약관리 규정 구매관리 규정 |
| | 8.6 부패방지에 대한 의지표명 | 부패방지 주관부서 | 윤리규범 |
| | 8.7 선물, 접대, 기부 및 유사한 편익 | 부패방지 주관부서 | 윤리규범 윤리규범 실천지침 |
| | 8.8 부패방지 관리의 불충분에 대한 관리 | 내부심사 주관부서 |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규정 내부심사 규정 |
| | 8.9 문제/우려사항 제기 | 제보처리 주관부서 | 제보처리 지침 |
| | 8.10 부패의 조사 및 조치 | HR 주관부서 부패방지 주관부서 | 상벌 규정 |
| 9. 성과 평가 |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 부패방지 주관부서 |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규정 |
| | 9.2 내부심사 | 부패방지 주관부서 |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규정 |

| | | | |
|---|------------------------|----------------|------------------------|
|  | Title |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 Issue Date: 2023/05/12 |

| | | | |
|--------|-----------------|-----------|----------------------------|
| | 9.3 경영검토 | 부패방지 주관부서 |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규정 이사회 규정 |
| | 9.4 부패방지 책임자 검토 | 부패방지 주관부서 |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규정 |
| 10. 개선 | 10.1 부적합 및 시정조치 | 부패방지 주관부서 |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규정 |
| | 10.2 지속적 개선 | 부패방지 주관부서 |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규정 |

별첨2. 부패 리스크 평가 절차

① 평가 대상


SK케미칼 그린케미칼 사업 본사 및 울산

② 평가 절차 방법

매년 부패방지 주관부서에서 부패방지 자정시스템 점검/평가지 사전에 통보된 부패방지 자정시스템 점검평가표 및 기준에 따라 부패 리스크를 평가한다.

③ 리스크 식별 및 평가

1. 부패방지 주관부서는 각 부서의 주요업무 범위에서 내/외부 이슈,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부정적인 이슈는 리스크에 반영하여 리스크를 1차 평가하여 모든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는 1차 평가된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법 및 관련 사항을 추가 보완 및 수정하고 리스크에 따른 개선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2. 리스크 평가 시 과거 사건/사고 및 미준수 사례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 | | |
|---|------------------------|----------------|------------------------|
|  | Title |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 Issue Date: 2023/05/12 |

3. 리스크 평가 시 발생 빈도(표1) 및 심각도(표2) 지표를 적용하되 가능한 정량적인 근거에 따르며, 정량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성적인 판단으로 결정한다

(표1) 리스크 발생빈도

| 단계 | 5 | 4 | 3 | 2 | 1 |
|-------|----|---|----|---|------|
| 발생가능성 | 상시 | 월 | 반기 | 년 | 격년이상 |

(표2) 리스크 심각도

| 단계 | 피해정도 | 물적 손해 | 제재 범위 |
|----|-------|---------|-------------------|
| 5 | 치명적 | 10억원 이상 | 회사에 대한 심각한 법적 처벌 |
| 4 | 매우 심각 | 10억원 이하 | 회사에 대한 법적 처벌 |
| 3 | 심각 | 1억원 이하 | 위반자 형사 처벌/내부징계 면직 |
| 2 | 보통 | 5천만원 이하 | 내부 징계 강등, 정직 |
| 1 | 경미 | 5백만원 이하 | 내부 징계 감봉, 견책 |

4. 리스크의 빈도와 심각도의 곱으로 리스크의 위험도를 결정한다 (표3).


5. 리스크 위험도 수치에 따라 H/M/L의 3단계로 구분하되, 심각도가 4 이상일 경우 최소 M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가. H (높음) : 15이상, 단 심각도가 5인 경우는 모두 포함

나. M (중간) : 8이상, 단 심각도가 4인 경우는 모두 포함


다. L (낮음) : 8미만

(표3) 리스크의 위험도 결정

| | | | |
|---|--------------|----------------|------------------------|
|  | Title |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 Version #: 1.0 | Issue Date: 2023/05/12 |

| 구분 | | 빈도 | | | | |
|-----|---|------|-------|-------|-------|-------|
| | | 1 | 2 | 3 | 4 | 5 |
| 심각도 | 1 | 1(L) | 2(L) | 3(L) | 4(L) | 5(L) |
| | 2 | 2(L) | 4(L) | 6(L) | 8(M) | 10(M) |
| | 3 | 3(L) | 6(L) | 9(M) | 12(M) | 15(H) |
| | 4 | 4(M) | 8(M) | 12(M) | 16(H) | 20(H) |
| | 5 | 5(H) | 10(H) | 15(H) | 20(H) | 25(H) |

6. 부패방지 주관부서는 각 부서와 평가결과에 대해 협의/조정하고 조치목표/방안 등을 수립한다.
7. 리스크에 대한 정기 평가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 필요시 부분적인 수시 평가 및 보완을 실시할 수 있다.
8. 리스크 조치계획의 유효성 확인
 - 가. 각 부서는 리스크에 따른 조치계획을 예정기한에 수행한다
 - 나. 리스크 조치 계획의 수행결과는 부패방지 주관부서에서 매년 내부심사 및 부패방지자정점검을 통해 확인하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시정조치 활동을 통해 개선한다.

| | | | |
|---|------------------------|----------------|------------------------|
|  | Title | | |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 | | |
| |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 Version #: 1.0 | Issue Date: 2023/05/12 |

별첨3. 역량/적격성 기준표

| 구분 | 역량/적격성 기준 | | 심사자 | 인증자 |
|---------------------|-----------|--|---------------|-------|
| 내부 심사원 | 경 력 | - 근무경력 3년 이상 | 부패방지 주관부서장 | 준법지원인 |
| | 교육훈련 | - 내부 심사원 과정 교육 이수자 | | |
| 부패방지 주관부서 책임자 | 경 력 | - 근무경력 3년 이상 - 윤리 경영 분야 1년이상 | 부패방지 주관부서장 | 준법지원인 |
| | 교육훈련 | - 윤리 경영 관련 교육 3시간 이상 이수자 | | |
| 각부서 부패방지 담당자 | 경 력 | - 근무경력 3년 이상 | 부패방지 주관부서장 | 준법지원인 |
| | 교육훈련 | - 윤리 경영 관련 교육 3시간 이상 이수자 | | |
| 제보 조사원 | 경 력 | - 준법지원인이 지정한자 - 제보자/피제보자와 관련이 없는 자 | 부패방지 주관부서장 | 준법지원인 |
| | 교육훈련 | - 제보 업무 관련 교육 3시간 이상 이수자 | | |